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의 공시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임원 및 직원의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며, 회사의 내부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절히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정의)

- ① “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 1 편에 따른 공시의무사항 및 그 외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 ② “공시책임자”란 공시규정 제 2 조 4 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③ “임원”이란 이사(「상법」 제 401 조의 2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 ④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에 따른다.

제 3 조 (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내부정보의 관리

제 4 조 (내부정보의 관리)

- ① 임원 및 직원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부정보를 철저히 보호·관리하여야 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관련 문서의 보관, 열람, 전달, 복제, 파기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내부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직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내부정보의 관리 및 통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와 책임 체계는 별도 내규 또는 세부지침에 따를 수 있다.

제 5 조 (공시책임자)

- ①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고, 지체 없이 이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의 적절한 관리와 공정한 공시를 위하여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시사항의 작성 및 집행
 -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적정성 평가
 -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판단
 - 4. 임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 내부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마련
 - 5. 내부정보 관리 또는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팀 또는 임직원 지휘 및 감독
 - 6. 그 밖에 대표이사가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 공시책임자는 직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1. 내부정보와 관련 자료 및 기록의 제출 요구 및 열람 권한
 - 2. 회계, 감사 또는 기타 관련 부서의 임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 ④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 담당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공시책임자가 부재 중이거나 긴급 공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공시대응 책임자가 공시업무를 일시 대행하며, 해당 내용은 공시책임자 복귀 시 지체 없이 보고되어야 한다.

제 6 조 (공시담당자)

- ① 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지정하고, 지체없이 이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공시담당자는 공시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집·관리 및 공시업무를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내부정보의 수집 및 검토,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2. 공시사항의 집행 및 공시 수행에 필요한 실무 처리
 3. 공시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개정 사항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공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7 조 (내부정보의 집중)

- ① 임원 및 각 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이미 공시된 내부정보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 ②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제 1 항에 따른 내부정보의 적시 제공을 위해 회사 내 정보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가 협의 또는 검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 7 조의 2 (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의무사항 또는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사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해당 제도의 목적과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 7 조의 3 (자회사 내부정보의 집중)

- ① 회사는 자회사에서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회사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자회사에 내부정보의 수집, 검토 및 보고를 전담할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해당 담당자는 자회사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책에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 ③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당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범위에 대해 사전 교육 또는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공시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회사로부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회사와 자회사는 공시정보 담당자 간의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자회사 내부정보가 정확하고 적시에 관리·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 8 조 (내부정보의 사외제공)

- ① 임원 또는 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회사의 거래상대방, 외부감사인, 대리인, 또는 법률·경영 자문계약을 체결한 자 등에게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공시책임자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시책임자는 해당 정보의 비밀 유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 1 항에 따른 내부정보 제공이 공시규정 제 15 조에 따른 공정공시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공시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장 내부정보의 공개

제 9 조 (공시의 종류)

- ①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시규정 제 1 편 제 2 장 제 1 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공시규정 제 1 편 제 2 장 제 2 절에 따른 조회공시
 3. 공시규정 제 1 편 제 2 장 제 3 절에 따른 공정공시
 4. 공시규정 제 1 편 제 3 장에 따른 자율공시
 5. 법 제 3 편 제 1 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6. 법 제 159 조, 제 160 조, 제 165 조와 공시규정 제 1 편 제 2 장 제 4 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7. 법 제 161 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 ②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시규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에 따라,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도 공시대상에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공시의 실행)

- ① 공시담당자는 제 9 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제 1 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과 서류가 관련 법령 및 공시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공시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공시책임자는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기한 이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 11 조 (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거나, 그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정정공시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2 조 (언론사의 취재 등)

- ① 임직원은 회사의 공식 채널이 아닌 수단을 통해 내부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언론사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 요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응답하며, 필요 시 관련 팀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응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할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는 필요 시 그 내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이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는 대표이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회사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⑥ 공시책임자는 제 3 항에 따라 배포되는 보도자료가 공정공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언론 배포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 13 조 (기업설명회)

- ① 대표이사는 IR 활동이 회사의 중요한 경영 책무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경영 현황, 사업계획, 재무전망 등에 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 ③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기업설명회의 일시, 장소 및 주요 내용을 설명회 개최 전일까지 공시하고, 관련 자료를 설명회 개최 전까지 거래소 공시제출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④ 기업설명회와 관련된 설명자료, 질의응답 내용, 참석자 목록 및 기타 주요 사항은 전자 문서 형태로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 기간은 원칙적으로 3 년 이상으로 한다.
- ⑤ 임원 및 직원은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공정공시 대상 정보 중 사전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 13 조의 2 (풍문)

- ① 공시책임자는 시장에 특정 풍문이 유포된 경우, 관련 사업 부서로부터 의견을 조회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해당 풍문의 사실 여부 및 내부정보 해당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풍문이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 13 조의 3 (정보제공 요구)

- ① 공시책임자는 주주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 받은 경우, 해당 요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제 1 항의 결정을 위하여, 요청된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 또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제 1 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 12 조 제 3 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 4 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 14 조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 ① 임원 및 법 제 172 조 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94 조에 해당하는 직원이 특정증권 등을 매수한 후 6 개월 이내에 이를 매도하거나, 매도 후 6 개월 이내에 재매수하여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은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보유자 포함)는 회사에 대하여 제 1 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해당자에게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에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사실을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자의 직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날짜
 4. 회사의 반환 청구 계획
 5. 주주는 회사에 반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2 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주주는 회사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 ④ 제 3 항에 따른 공시의 유지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날부터 2 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 15 조 (특정증권 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 및 법 제 172 조 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94 조에 해당하는 직원은 특정증권 등의 매매 또는 기타 거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6 조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 및 직원은 법 제 174 조 제 1 항에 따라,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또는 기타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 장 보 칙

제 17 조 (교육)

- ①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 36 조에 따른 공시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는 해당 교육 내용을 관련 임원 및 직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임원 및 직원에게 제 14 조부터 제 16 조까지의 내부자 거래 관련 사항과 기타 법령상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18 조 (규정의 개정 및 폐지)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시행한다.

제 19 조 (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개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 년 05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개정일)

본 규정은 2025 년 07 월 0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